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권위원 자격·구성 및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73호)

2024. 8.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인권위원 자격요건 변경 및 장애인 포함 의무화	4
2.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등	9
3. 회의록 기록·보관 및 공개	16
4. 부 칙	20
※ 참고자료	2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미화 · 김남희 · 황운하 · 복기왕 · 한병도 · 김선민
김예지 · 주철현 · 박희승 · 백승아 · 박수현 · 박해철
오세희 · 신영대 · 한창민 · 윤종오 · 민형배 · 박지원
정준호 · 조계원 · 조정식 · 강선우 · 차규근 · 김원이
윤종균 · 김 현 · 김현정 · 박 정 · 정혜경 · 이광희
정진욱 의원(31인)

2. 제 안 일 : 2024. 6. 21.

3. 회 부 일 : 2024. 6. 24.

※ 의안번호 : 77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편적 · 헌법적 가치인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갈수록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기관 구성의 독립성, 업무의 투명성 등이 전제되어야 하고, 다양한 사회계층 · 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음.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인권위원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독립적인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는 않음. 현행 인권위원 임명절차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선출·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해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독립성, 투명성 강화를 통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후보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는 국가인권기구 정기등급심사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A 등급을 재승인하면서, ‘단일독립선출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법에 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아울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는 회의 공개, 인권위원 추천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투명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고도로 분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계층의 인권보호가 필요하다는 점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정기구로 장애인 관련 진정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인권위원 중 장애인당사자, 장애인권 전문가, 장애인권 경험자 부족으로 장애인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에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단일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의사 공개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인권위원의 자격요건에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인 장애 인권 전문가를 신설하여 인권위원 구성 시 해당 위원이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 맞추어 국가인권위원회 제도·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14조).

Ⅲ. 검토의견

1. 인권위원 자격요건 변경 및 장애인 포함 의무화 (안 제5조제3항 및 제7항)

개정안은 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하 “인권위원”이라 함)의 자격요건 중 대학·연구기관 관련 경력 요건을 ‘인권 연구·교육 등 분야’로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자격요건에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인 장애 인권 전문가’를 추가하는 한편, ② 인권위원회에 장애인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율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③ ----- ----- ----- ----- -----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u>부교수</u>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1. ----- <u>인권 연구·교육 등 분야의 부교수</u>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신설>	4. <u>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인 장애 인권 전문가</u>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⑦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u>하여야</u> 한다.	⑦ ----- ----- <u>하고,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u> -----.

1) 인권위원 자격요건 변경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3항¹⁾은 ① 대학·연구기관 부교수 10년 이상 재직, ②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재직, ③ 인권 관련 활동 10년 이상 종사, ④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 시민사회 단체 추천을 인권위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인권위원의 자격요건은 종래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2016. 2. 3.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하여 구체화한 것으로, 이는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감수성을 가진 보다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선출 또는 지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²⁾

그런데, 실질적인 인권 관련 경력과 무관하게 교수 경력 또는 법조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과 더불어, 장애·여성·성소수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국가인권위원회법」 (2016. 2. 3. 일부개정·시행) 주요내용

- 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선출 또는 지명될 수 있도록 그 자격기준을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대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인권 관련 활동 종사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이로 인하여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그 자격기준에 포함함(제5조제3항).

자·이주민·아동 등 다양한 소수자 계층의 대표성이 인권위원 구성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등 인권위원의 전문성·다양성 부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참고자료 1 참조).³⁾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인권옹호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감수성을 두루 갖추거나 소수자 계층의 대표성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대학·연구기관 부교수 10년 이상 재직 요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인권 관련 업무 경력(인권 연구·교육 등 분야)을 갖추도록 요구하고,⁴⁾ 소수자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장애 인권 전문가(장애인)를 인권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추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3)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성 강화1: 독립성 보장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2018, p.79

4) 참고로,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대하여 특정 분야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3.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인권위원회 장애인 포함 의무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6항⁵⁾은 인권위원의 구성에 관하여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이러한 인권위원의 구성에 관해서는 장애·여성·성소수자·이주민·아동 등 다양한 소수자 계층의 대표성이 인권위원 구성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등 인권위원의 다양성·다원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음.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이고 장애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되어 활동⁷⁾하고 있는데, 장애 관련 사건이 전체 차별행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상황⁸⁾에서 현행법상 인권위원 구성에 장애인 위원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장애인 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 당사자 위원 수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⁹⁾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⑦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인권위원 4명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2016. 2. 3.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하여 인권위원회의 구성이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 것임.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8)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2001년부터 2024년 5월까지의 차별사유별 진정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41,082건 중 18,369건(44.7%)이 장애 관련 사항임(국가인권위원회, 「제415회국회(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 업무현황」, 2024, p.10).

이에 개정안은 11명의 인권위원 중 최소 1명 이상 장애인인 장애인권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규율함으로써, 인권위원의 다양성·다원성과 인권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인권위원에 대하여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반드시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인 장애 인권 전문가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¹⁰⁾

장애인단체가 추천하지 않았지만 다른 자격요건(대학·연구기관 부교수 10년 이상 재직,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재직 등)에 해당하는 장애인 인권 전문가도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인 장애 인권 전문가로 제한할지 또는 ‘장애인인 장애 인권 전문가’로 그 범위를 확대할지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성 강화1: 독립성 보장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2018, p.79

10) 장애인단체는 사실상 인권위원 1명에 대한 추천권을 확보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2.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등 (안 제5조제2항·제4항 및 제5조의2)

개정안은 인권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고, 국회·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선출·지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2]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구 분	주요내용
설 치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
기 능	인권위원 추천
구 성	<u>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 (아래의 5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u> 1. 대학·공인연구기관의 부교수(상당) 이상 직위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현행)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현행) 3.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현행) 4.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인 장애 인권 전문가(개정안) 5.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현행)

[표-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u>다음</u>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 ----- <u>제5</u> <u>조의2에 따른 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u> <u>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다음</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④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u>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 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④ -----인권의----- -----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위원을----- -----. <u>제5조의2(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u> ① <u>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② <u>추천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③ <u>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u>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선출·지명¹¹⁾한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하는 방식인데, 이에 대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 임명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¹²⁾

참고로,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아일랜드 등의 국가 인권기구에서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

11) 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12)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성 강화1: 독립성 보장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2018, p.80

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음(참고자료 2 참조).

또한, 2018년부터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7명 또는 9명의 위원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왔으며, 2024년 6월 현재 까지 후보추천위원회를 총 8회 운영하였음. 후보추천위원회는 인권위원(위원장 포함) 지명권자인 대통령에게 3~4명의 인권위원(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였으며,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지명해 왔음.¹³⁾

[표-4]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명	구성일	후보추천위 구성 내역		추천인원
		인원수	구 성	
최영애 (위원장)	2018. 6. 15.	7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3명
송두환 (위원장)	2021. 6. 13.	9	대통령 추천 4,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 4	4명
박찬운 (상임위원)	2019. 10. 18.	7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3명
김용원 (상임위원)	2022. 12. 21.	7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3명
문순희	2019. 6. 13.	7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3명
서미화	2020. 2. 1.	7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3명
김종민	2022. 9. 21.	7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4명
이한별	2023. 5. 26.	7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4명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13)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업무협조 요청을 받아 회의지원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법규나 지침 등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에 따른 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독립성, 투명성, 민주성을 제고하여 인권위원의 전문성과 다원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히,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서 202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등급분류 심사 시 A등급 재승인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또는 다른 행정지침에 단일 독립선출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독려한다’고 권고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참고자료 3 참조).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기관과 위임법령 형식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고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는 단일 독립선출위원회 설치에 관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그런데,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4명)은 별개로 하더라도 국회 선출 인권위원(4명) 및 대법원장 지명 인권위원(3명)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된 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인권위원 후보를 추천하고 이에 따라 국회 및 대법원장이 선출 또는 지명하게 되면, 외부적으로 국회 및 대법원장이 인권위원으로 선출 또는 지명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단순하게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인권위원 선출·지명 기관을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대통령, 대법원으로 구분하여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현행법 규정¹⁴⁾과 상충될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인권위원 선출·지명 기관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위임법령의 종류를 인권위원 선출·지명 기관의 법령체계에 맞추어 국회규칙·대통령령·대법원규칙으로 구분하여 명시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에 설치되어 있고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으며, ②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고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음. ③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및 ④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에 설치되어 있고 관련 사항은 국회규칙에 위임되어 있음.

[표-5] 후보추천위원회 설치기관 및 위임법령 현황

후보추천위	설치기관	위임법령 형식	비 고
대법관후보추천위	대법원	대법원규칙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검찰총장후보추천위	법무부	대통령령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제청
특별검사후보추천위	국회	국회규칙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장후보추천위	국회	국회규칙	-

1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둘째,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은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근거와 추천위원의 요건 및 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임.

구체적으로,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공정성 및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 구성시기·소집요건·의결정족수·존속기한, 추천위원장 선출, 추천위원의 위촉방식·구성, 추천후보 수, 추천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다른 후보추천위원회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추천위원 위촉방식·구성은 참고자료 2 참조).

[표-6] 후보추천위원회 입법례 비교

구 분	대법관후보 추천위 (법원조직법 §41의2)	검찰총장후보 추천위 (검찰청법 §34의2)	특별검사후보 추천위 (특검법 §4)	공수처장후보 추천위 (공수처법 §6)
구성 시기	대법관 후보 제청 시	검찰총장 후보 제청 시	-	-
소집 요건	○ 대법원장 요청 ○ 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 법무부장관 요청 ○ 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 국회의장 요청 ○ 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 국회의장 요청 ○ 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의결 정족수	재적 과반수 찬성	재적 과반수 찬성	재적 과반수 찬성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존속 기한	후보 추천 시 해산	후보 추천 시 해산	후보 추천 시 해산	후보 추천 시 해산

구 분	대법관후보 추천위 (법원조직법 §41의2)	검찰총장후보 추천위 (검찰청법 §34의2)	특별검사후보 추천위 (특검법 §4)	공수처장후보 추천위 (공수처법 §6)
위원장 선출	대법원장 임명·위촉	법무부장관 임명·위촉	위원 중 호선	위원 중 호선
추천 후보 수	3배수 이상	3명 이상	-	-
추천 효력	대법원장은 추천 내용 존중	법무부장관은 추천 내용 존중	-	-
기타	-	-	○ 정치적 중립성 ○ 직무수행 독립성	○ 정치적 중립성 ○ 직무수행 독립성

셋째, 개정안은 제5조제4항에서 국회·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위원 후보추천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하도록 하는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은 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인권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각 선출·지명 기관이 선출·지명 과정에서 이미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하였다면 대통령이 임명 과정에서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개정안 제5조제2항은 현행대로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회의록 기록·보관 및 공개 (안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회의의 명칭, 일시 및 장소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록과 회의 영상을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7]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사의 공개) (생략)	제14조(의사의 공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회의 일시 및 장소 3. 회의의 공개여부(비공개 시 사유) 4. 심의 안건 5.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직위·성명 6.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 7. 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사항·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8.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신설>	③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록을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회의 영상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의사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4조¹⁵⁾는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의사공개 원칙은 방청의 자유를 인정하며 의사에 대한 보도의 자유, 국가인권위원회 회의 자료 및 회의록의 공표나 배부의 자유 등의 원칙을 포함¹⁶⁾하는 것으로 이해됨.

회의록의 작성·공개 등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존재하지 않으나, 하위 규범인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¹⁷⁾

1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4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2020, p.96

17)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회의록의 작성) ① 각 위원회는 회의의 운영 및 진행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명
2. 회의 소집자
3. 일시 및 장소
4. 출석한 인권위원 및 회의에 참석 또는 배석한 사람의 성명과 직책
5. 회의 진행 순서
6. 상정 안건
7. 토론 내용
8. 의결 사항 및 표결 방법과 표결 내용
9. 의견서 또는 질의·답변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과 별도로 속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④ 간사는 작성된 회의록(속기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각 위원회 차기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차 회의록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각 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이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⑥ 회의의 내용은 녹음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⑦ 위원회 회의록 및 속기록은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의 절차와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회의록, 속기록의 작성 및 보고) ① 회의록은 운영규칙 제8조에 따라 작성하고 속기록을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 및 속기록은 차기 전원위원회에서 위원의 검토와 수정과정을 거친 회의록

이 중 주요 내용을 개정안의 내용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8] 회의록 작성·공개 관련 현행 및 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기재사항	○ <u>회의명</u> ○ 회의 소집자 ○ <u>일시 및 장소</u> ○ <u>출석 인권위원 및 회의 참석</u> · 배석한 사람의 성명·직책 ○ 회의 진행 순서 ○ <u>상정 안건</u> ○ <u>토론 내용</u> ○ <u>의결 사항 및 표결 방법과 표결</u> <u>내용</u> ○ <u>의견서 또는 질의·답변</u> ○ 그 밖의 필요 사항	○ <u>회의 명칭</u> ○ <u>회의 일시 및 장소</u> ○ 회의의 공개여부(비공개 사유) ○ <u>심의 안건</u> ○ <u>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직위</u> <u>· 성명</u> ○ <u>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u> ○ <u>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사항·</u> <u>결정사항 및 표결내용</u> ○ 그 밖에 위원회·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정하는 사항
속기록 작성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 별도 작성·보관	-
녹음	회의 내용 녹음 및 별도 보관	-
공개	회의록·속기록 필요 시 공개 가능(재량)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 회의록 및 회의 영상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의무) ※ 영상 촬영에 관한 규정 없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의

및 속기록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전자결재로 보고한다.

제29조(회의록, 속기록의 작성 및 보고) ① 회의록은 운영규칙 제8조에 따라 작성하고, 속기록을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 및 속기록은 차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의 검토와 수정과정을 거친 회의록 및 속기록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전자결재로 보고한다.

제33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① 회의록은 운영규칙 제8조에 따라 작성하고, 차기 소위원회에서 위원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소위원장에게 전자결재로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소위원장 및 서기의 회의록 서명으로 같음한다.

「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속기록 공개 방식)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속기록을 외부에 공개할 때에는 위원명을 기재하여 공개한다.

투명성 확대를 위하여 회의록 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②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 논의의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전 위원위원회 등의 회의를 녹화한 영상을 공개하는 방안의 마련을 권고하였음.¹⁸⁾

개정안과 같이 회의록 기재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회의록과 회의 영상을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 회의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인권위원의 발언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회의 영상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회의 내용의 녹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실무적으로 작성된 회의록을 간사가 차기 회의에 제출한 후 인권위원의 검토와 수정과정 등을 거치게 되는데, 개정안에 따른 회의록 공개 기한인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에 적정하고 충분한 기간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18)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성 강화2: 투명성 제고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2018, p.90

4. 부 칙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표-9] 개정안 부칙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먼저, 시행일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제3항)과 의사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안 제14조제4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규칙 정비에 필요한 적절한 시행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제1항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율하고 있음.

다음으로,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인 장애 인권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인권위원 구성이 변경되는데, 기존 인권위원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새로 선출·지명하는 인권위원부터 개정규정을 적용

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한쪽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인권위원 구성을 변경했던 2016. 2. 3.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두었음.

[표-10] 인권위원 구성 관련 경과조치 입법례

법률 제14028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선출·지명하거나 임명할 당시 제5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性)의 위원을 선출·지명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5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5조제5항에 따른다.

문 의 처

02)6788-5017



직 위 (직 급)	성 명	주요경력	임기	선출· 지명기관
위원장(男) (장관급)	송두환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법무법인(유한) 한결 대표변호사	21. 9. 4. ~24. 9. 3.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女) (차관급)	남규선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 국가인권위원회 공보담당관·시민교육팀장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간사·총무	21. 8. 6. ~24. 8. 5.	국회 선출
상임위원(男) (차관급)	이충상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22. 10. 24. ~25. 10. 23.	국회 선출
상임위원(男) (차관급)	김용원	· 서울중앙지검 등 검사 및 고등검찰관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부산항법률사무소 대표	23. 2. 6. ~26. 2. 5.	대통령 지명
위원(女) (비상임위원)	김수정	·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소위원회 위원 ·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21. 8. 27. ~24. 8. 26.	대법원장 지명
위원(男) (비상임위원)	한석훈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장 · 광주고등검찰청 부장검사	21. 10. 15. ~24. 10. 14.	국회 선출
위원(男) (비상임위원)	김종민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봉은 대표이사 · 사단법인 환경정의 공동대표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주지	22. 11. 22. ~25. 11. 21.	대통령 지명
위원(女) (비상임위원)	이한별	·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 · 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 소장 ·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	23. 6. 30. ~26. 6. 29.	대통령 지명
위원(女) (비상임위원)	원민경	· 법무법인(유) 원 변호사 · 한국여성의 전화 전문위원 및 이사 · 법무법인자하연 변호사	23. 7. 24. ~26. 7. 23.	국회 선출
위원(男) (비상임위원)	김용직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24. 3. 15. ~27. 3. 14.	대법원장 지명
위원(女) (비상임위원)	강정혜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4. 3. 15. ~27. 3. 14.	대법원장 지명



1. 해외 인권기구의 후보추천위원회 현황

국가명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후보추천위원회 기능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이 ‘위원선정패널’ 구성	위원선정패널에서 위원장급 3명, 위원급 8명 선정 후 명단 제출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	의회에서 정당 의석 비율에 맞추어 ‘추천위원회(Committee of the Assembly)’구성	추천위원회에서 다수 득표를 얻은 자가 인권 위원으로 추천됨.
태국 (국가인권위원회)	사법기관과 의회의 구성원이 구성하는 후보자선정위원회 구성	후보자선정위원회가 2배수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여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선출하여 국왕이 임명함.
아일랜드 (아일랜드 인권 및 평등 위원회)	위원 공식 발생시 정부가 자문단 (the Service) 구성	자문단이 예비 후보자를 선정, 정부 허가를 얻어 대통령이 지명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운영 현황 연구」, 2016

2. 국내기관의 후보추천위원회 현황

후보추천위원회	설치기관 (법적근거)	위원 구성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10명)	대법원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1항)	•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각 1명 •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1명 이상은 여성)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9명)	법무부 (검찰청법 제34조의2 제1항)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재직하였던 사람,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각 1명 •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1명 이상은 여성)

후보추천 위원회	설치기관 (법적근거)	위원 구성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7명)	국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각 1명 •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7명)	국회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밖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 다만,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있을 경우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위원으로 위촉



권고: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A등급 재승인을 권고한다.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승인소위는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는 파리원칙 및 이번 등급심사 기간 중 승인소위가 제시한 권고에 따라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틀과 일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 국제·지역·국가 차원의 관련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인권기구와도 적극적으로 교류를 지속할 것을 독려한다.

승인소위 참고 사항:

1. 인권위원 선출 및 임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하는 4명(그 중 2명은 상임),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그 중 1명은 상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인권위원을 임명한다.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식(인권위원 임기만료)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그러나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은 3개의 선출·지명기관에 의해 적용되는 일관되고 공식화된 단일 선출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으며, 국회는 정당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대법원은 시민사회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는다고 보고했다.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제출했음을 인정한다.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또는 다른 행정지침에 단일 독립선출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독려한다.

국가인권기구의 의사결정체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선출 및 임명 절차를 관련 법률, 규칙 또는 구속력 있는 행정지침에 적절히 규정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인권기구의 고위직에 대한 독립성과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과 기반의 선출을 촉진하고 다원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B.1과 국가인권기구 의사결정체의 선출 및 임명에 관한 승인소위의 일반견해 1.8을 참고한다.

2. 재정 자율성

승인소위는 「국가재정법」 제43조 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승인소위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강조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승인소위는 국가인권기구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고, 채용, 예산 및 회계를 포함한 특정 관행들을 규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국가가 국가기관들이 공적 자금(예산)의 사용에 대해 적절히 책임지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균일한 규칙이나 규정을 마련한 경우, 그러한 규칙이나 규정을 국가인권기구에 적용하는 것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독립적 및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능력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면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인정하며,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을 독려한다.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B.2와 국가인권기구의 행정규정에 관한 승인소위의 일반견해 2.7을 참조한다.